

[신청에 필요한 서류(체크 리스트)]

(1)과 (2)의 서류. (2)는 해당하는 항목의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시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담해 주십시오.

(1) 공통

- 신청서(아래 신주쿠구 보험료 감면 담당으로 전화로 청구하거나 신주쿠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 증명서(관공서 등이 발행한 다음 서류의 사본)
 - 1개로 가능(체류카드, 마이넘버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의 얼굴 사진이 있는 것)
 - 2개 필요(각 보험의 피보험자증, 각 보험의 보험료 납부 통지서, 주민표, 국민연금 수첩 등)

(2) 해당하는 것 중 어느 하나

- 2021년도에 주요 생계 유지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 진단서 등의 사본)
- 2021년도에 주요 생계 유지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 위독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입원 기간 증명서 등의 사본 (1개월 이상의 입원 등))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한 주요 생계 유지자의 수입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b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도
 - ※다음 확인 서류는 참고 예입니다.
 - a 2021년의 수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 명세서, 예금 통장이나 매출 장부 등의 사본)
 - ※신청월 이후의 월 수입 예상액은 신청월 전월까지 수입액의 '월 평균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b 2020년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서류의 사본)
 - 사업 수입(전년의 확정 신고서 B, 청색 결산 신고서 부분 등의 해당 부분, 수정 신고서, 경정 청구 통지서)
 - 부동산 수입(전년의 확정 신고서 B, 청색 결산 신고서 부분 등의 해당 부분, 수정 신고서, 경정 청구 통지서)
 - 산림 수입(전년의 확정 신고서 제3표, 청색 결산 신고서 부분 등의 해당 부분, 수정 신고서, 경정 청구 통지서)
 - 급여 수입(전년의 확정 신고서 A, 원천 징수표, 2021년도의 (비)과세 증명서 등)
 - c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주요 생계 유지자가 사업을 폐지 또는 실직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업 신고서, 폐쇄 사항 전부 증명서, 이직표, 회사의 퇴직 증명서 등의 사본)
 - ※ 보험료 감면액을 올바르게 판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 또는 주민세 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한 급여 수입이나 연금 수입만 있는 분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 · 개호(介護) 보험료 ·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감면 신청을 한꺼번에 접수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아래 담당으로 전화로 청구하거나 신주쿠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 대필 · 대독이 필요한 분이나 전화로 문의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서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잡 완화를 위해 방문 시에는 사전에 아래 담당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신주쿠구 보험료 감면 담당

※신청 기한은 2022년 3월 15일(필착) 예정

전화 03-5273-4189(평일 9:00 ~ 17:00) Fax 03-3209-1436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우160-8484 신주쿠구 카부키초 1-4-1 본청사 4층 7번 창구

홈페이지 URL https://www.city.shinjuku.lg.jp/hoken/hoken01_002033_00001.html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서류 미비 등이 있을 경우, 신주쿠구에서 연락을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만, 감면 신청이나 보험료 환급과 관련하여 직접 전화 · 메일 ·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 보험 · 개호(介護) 보험 ·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
신주쿠구의 피보험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알림입니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분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감면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2021년도 중에 주요 생계 유지자가 사망 또는 위독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세대의 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주요 생계 유지자의 2021년 사업 수입 등(사업 수입, 부동산 수입, 산림 수입 및 급여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의 분
국민 건강 보험과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은 ①~③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개호(介護) 보험은 ①과 ③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전액 면제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① 사업 수입 등 종류별로 본2021년 수입 중 어느 하나가 2020년에 비해 10분의 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2020년 소득 합계액이 1000만 엔 이하인 경우

③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종류의 소득 이외의 2020년 소득의 합계액이 400만 엔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는 보험료]

2021년도분 보험료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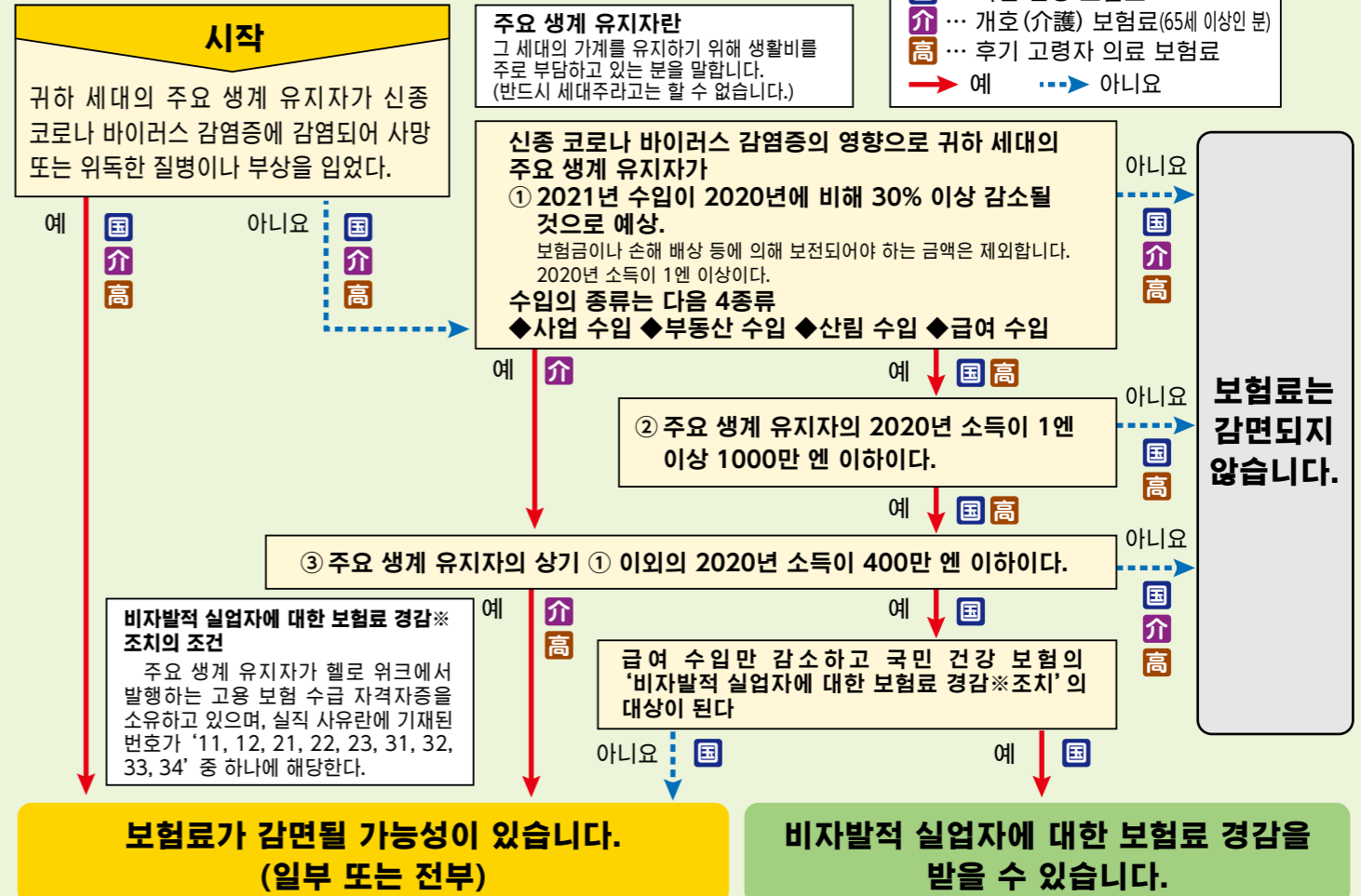
감면 대상 간이 판정 흐름 (감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주요 예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세대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분이 있을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보험료 마크 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国 ... 국민 건강 보험료
- 介 ... 개호(介護) 보험료(65세 이상인 분)
- 高 ...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 예 ... 예, ... 아니요



※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해고, 도산, 고용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실직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실직한 분(본인)의 전년 급여 소득을 100분의 30으로 하여 국민 건강 보험료의 산정 및 고액 요양비 등의 소득 구분 판정을 실시합니다. 경감 기간은 실적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